|  |
| --- |
| **사용대차 확인서** |
| 사용인(수급자) | 성 명 |  | 생년월일 |  |
| 주 소 |  |
| 임대인과의 관계 | □ |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(관계 : ) |
| □ |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(관계: ) |
| □ | 임대인이 제3자 |
| ※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(부모, 자녀, 사위, 며느리, 계부모) |
| 임대인과의 함께거주여부 | □ |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|
| □ |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|
| 사업내용 | 사용현황 | □ | 수급자가 방, 주방,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|
| □ | 수급자가 방, 주방,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|
| 임대기간 | 20 . . . ~ 20 . . .까지 |
|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| □ | 생활비 일부 보조 |
| □ | 육아․가사노동 |
| □ |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(대가: ) |
| **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(수급자)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** |
| 년 월 일 |
|  임 대 인 |
|  주 소 : |
|  성 명 : 인 |
|  생년 월일 : |
|  전화 번호 : |
|  **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․시장․군수․구청장** | **귀하** |
|  ※「주거급여법」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. |